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문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최재봉

전화 041-620-4326

## 보도자료

2024. 4. 17.(수)

제 목

# 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원 편취한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구속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3. 1.~12.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16억원 상당 보상금을 편취한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A를 4. 12.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4. 16.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천안시 고발과 경찰 수사를 통해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금 사기 혐의를 신속히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A를 구속하였으며,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6억원 이상의 사기 및 뇌물수수 등 여죄를 확인하고 공범 7명을 인지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 기소하였습니다.
-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하여 계속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8명) : 천안시청 공무원 A(구속), 보상금 신청 주민 7명(불구속)
- 주요 공소사실(A의 범행) ※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참조

- A는 '23. 1.~12.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약 16억원을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등]
-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민원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 1,500만원을 수수 [뇌물수수]

## 2 수사 경과

- '24. 3. 11. 천안시, 비위행위 발견하여 천안서북서에 고발
- '24. 3. 15. 경찰, A 체포(체포영장) / 3. 18. 구속 / 3. 25. 송치
- '24. 3. 27. A의 부모 명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및 오피스텔에 대해 기소 전 추정보전(약 3억 5,000만원 상당)
  - 검찰, 관련계좌 거래내역 분석, 천안시로부터 추가 자료 확보, 다수 사건관계인 조사 등 보완수사
- '24. 4. 12. 검찰, A 구속 기소 및 공범 7명 인지
- '24. 4. 16. 검찰, A의 여죄 및 공범 7명 추가 기소

## 3 수사 결과 및 의의

- 경찰의 신속한 1차 수사 진행과 범죄수익 추정보전
  - 천안시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A를 체포하고 휴대폰, 금융계좌 등 중요증거를 압수

하였으며, 허위서류 23건으로 7회에 걸쳐 10억원 상당 보상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밝혀내어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 경찰은 A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3억 5,000만원 상당 재산을 파악하여 추정보전 신청하였고, 검찰은 이를 청구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정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 검찰의 적극적 보완수사로 공범 인지 및 추가혐의 확인

-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추가범행의 단서를 포착하고, 범행 관련 계좌 30여개의 수 년간 거래내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또한 천안시의 추가자료 검토, 사건관계인 조사 등 보완수사 결과, A가 허위서류 36건으로 16회에 걸쳐 6억여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편취하고, 범죄수익은닉, 뇌물수수한 여죄를 인지하였으며, A가 범죄수익을 해외도박 등으로 탕진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A에게 보상금 신청서류 및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도 추가 인지하여 기소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밝혀 처리하였습니다.

※ A는 편취한 약 16억원 중 약 15억원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범죄수익은 공범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누어 가졌습니다.

## 4 향후 계획

-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추정보전되어 있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수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토지보상금 등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별첨]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연번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행사	'23. 1.~12. 피해자 천안시 상대로, A가 미리 포섭 한 주민들 명의로 토지·지장물·영농손실 보상금을 신청한 후 사업구역 외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허위 권리자를 내세우거나 면적 등 현황을 속여 허위서 류 꾸미는 수법으로 보상금 편취 ▲송치: 7회, 약 10억 4,800만원 편취 (허위·위조 공문서 23건) ▲추가 적발: 16회, 약 6억 1,400만원 편취 (허위 공문서 36건)	'24. 4. 12. 구속 기소
		특경법위반 (배임) 및 특경법위반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위 보상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신청인 4 명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 보상금 신청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에 사용	'24. 4. 16. 추가 기소
		범죄수익 은닉법위반	보상금 신청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A의 지인 3명의 계좌로 173회에 걸쳐 약 8억 4,300만원 이체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뇌물수수	'22. 9. 28. 보상금 신청 민원인 B로부터 보상금 업 무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 수수	
2	B	뇌물공여	A에게 보상금 업무 관련 현금 1,500만원 공여	
3	C	사기방조	1회 약 6,600만원 보상금 사기 방조	
4	D	특경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4회 약 6억 2,900만원 보상금 사기 방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체크카드 대여	'24. 4. 16. 불구속기소
5	E	사기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4회 약 2억 5,500만원 보상금 사기 방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체크카드 대여	
6	F	사기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8회 약 4억 880만원 보상금 사기 방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체크카드 대여	
7	G	사기방조	1회 약 1억 4,900만원 보상금 사기 방조	
8	H	사기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6회 약 1억 4,900만원 보상금 사기 방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체크카드 대여	